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2018.1.17.)

조례 · 규칙안 심사 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18. 1. 4.
- 나. 발 의 자: 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
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11명)
- 다. 회부일자: 2018. 1. 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1. 16.

2. 개정이유

- 2018년도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2017년도 월정수당에서 3.5%를 인상하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15.1.6.)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6조 제2항)
 - 1,703,440원 ⇒ 1,763,060원
- 나.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안 제7조 별표1)
 - 운임과 숙박비 정액 지급 ⇒ 실비 지급

구분	현 행					개 정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46,000	실비 (1등급)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금액을 3.5% 인상하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15.1.6.)에 따른 국내 숙박비와 국내여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실비 지급제 도입 등 반영하여 의원 여비 지급 기준 범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18. 1. 4.
- 나. 발 의 자: 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
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11명)
- 다. 회부일자: 2018. 1. 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1. 16.

2. 개정이유

- 지난('14.5.2.) 국회에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 배지의 교부방식을 통일시키는 추세에 따라 의원배지의 교부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의원 배지 교부방법 변경(안 제8조 제1항)
 - 당초: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따라 번호순 교부
 - 변경: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발급대장 관리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규칙안은 지난 2014년 5월 2일자로 국회에서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전국 시·군·구·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표준안을 제정하여 각 지자체에 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배지 교부방법을 통일시키고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 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 없음